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2023.12.01. 시행)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제16조(서류의 송달)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진찰요구) 공제중앙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제중앙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가입자, 피공제자 또는 수급권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공제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② 공제중앙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제2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상해공제

제21조(피공제자) ① 피공제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한 때에 피공제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2. 피공제자가 휴학 또는 졸업한 경우
3.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경우
4.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제22조(공제급여의 지급사유) 이 계약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사유는 해당 상해공제 특별약관에 따른다.

제23조(공제급여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① 상해공제 특별약관의 "사망"에는 공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공제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상해공제 특별약관의 "사망"의 원인 및 "유족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상해공제 특별약관의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한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공제수익자와 공제중앙회가 상해공제 특별약관의 피공제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수익자와 공제중앙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공제급여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공제중앙회가 전액 부담한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기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다만, 그 후유장해가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경우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⑩ 이미 이 계약에서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상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한다),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피공제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급여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⑪ 공제중앙회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장해급여는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4조(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의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1. 공제가입자, 교직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 미수, 「형법」 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
3. 피공제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한다), 산후기. 다만, 공제중앙회가 보상하는 공제급여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5.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사고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8.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9. 핵 및 방사능 관련 사고
10.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
11.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

② 공제중앙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상해공제 특별약관의 공제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한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수상보트, 수영, 스키, 수상스키, 승마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 활동

제3장 배상책임공제

제25조(피공제자) ① 피공제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경우
2.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된 경우

제26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중앙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 또는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보상한다.

1.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8조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8조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가입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다만, 공제중앙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마. 피공제자가 제2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중앙회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공제중앙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학교업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본다. 다만,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한다.

제2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한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제3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다만,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피공제자 및 피공제자의 근로자(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가 학교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11.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한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를 포함한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다음 각 목의 손해는 보상한다.

가. 피공제자의 학교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공제자의 학교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공제자가 양도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배상책임과 학교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4.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의 학교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학교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5.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학교시설을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제3자(제3자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

17. 학교 교직원(강사, 조교 등을 포함)이나 학교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18.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체육특기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훈련,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한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28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한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제중앙회의 동의를 받는 일. 다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제외한다.
4.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제중앙회의 동의를 받는 일

②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뺀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제중앙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뺀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공제중앙회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뺀다.

제2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중앙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자는 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중앙회에 대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제중앙회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대한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공제중앙회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제중앙회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공제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공제중앙회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제중앙회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제중앙회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30조(대위권) ① 공제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중앙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공제중앙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진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피공제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중앙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중앙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교내치료비)

제1조(피공제자) ① 피공제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한 때에 피공제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2. 피공제자가 휴학 또는 졸업한 경우
3.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경우
4.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중앙회는 보통약관 제2장 배상책임공제 제26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장 배상책임공제 제26조(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학교 내에서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를 보상한다.

② 공제중앙회는 피공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공제가입자, 교직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 미수를 포함한다)로 생긴 치료비
2. 「형법」 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피공제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생긴 치료비
4. 공제가입자(교직원을 포함한다)와 피공제자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치료비
5. 피공제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거나 공제가입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6. 공제가입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체육특기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훈련,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학교 밖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 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치료비
11.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치료비
12.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치료비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치료비
14.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치료비
1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사고로 생긴 치료비
17.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유사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치료비
18. 경주나 속도 또는 파괴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치료비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공제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제3장 배상책임공제)을 준용한다.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교외치료비)

제1조(피공제자) ① 피공제자는 학교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한 때에 피공제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2. 피공제자가 휴학 또는 졸업한 경우
3.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경우
4.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공제중앙회는 보통약관 제2장 배상책임공제 제26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장 배상책임공제 제26조(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학교 밖에서 피공제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를 보상한다.

② 공제중앙회는 피공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공제가입자, 교직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자해, 자살, 자살 미수를 포함한다)로 생긴 치료비
2. 「형법」 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3. 피공제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생긴 치료비
4. 공제가입자(교직원을 포함한다)와 피공제자 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치료비
5. 피공제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거나 공제가입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치료비
6. 공제가입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7.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체육특기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훈련,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8. 학교 내에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9.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치료비
11.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치료비
12.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로 인해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치료비
13. 위 제12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치료비
14.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치료비
1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사고로 생긴 치료비
17.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의 유사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치료비
18. 경주나 속도 또는 파괴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한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치료비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공제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제3장 배상책임공제)을 준용한다.